

8.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225호 1999. 12. 30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을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장의2.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제22조의2(위치 및 관할구역)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2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소관사무

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강화출장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하부조직·업무분장·관할구역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항·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3과 같고,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별표 2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7(지방국도관리청공무원정원표), 별

표 13(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무원정원표), 별표 14(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무원정원표) 생략

[별표 2의2]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22조의2관련)

구 분	위 치	관 할 구 역
수원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및 용진군 일원의 국도 경기도 화성군, 평택시의 팽성읍·진위면·서탄면·고덕면·오 성면·청북면·포승면·현덕면·안중면, 용인시의 기흥읍·포 곡면·모현면·구성면·수지면·백암면·양지면·이동면·원 삼면, 이천시의 부발읍·장호원읍·설성면·신둔면·마장면· 호법면·대월면, 광주군, 안성군, 김포군, 여주군 일원의 국도
전주국도 유지건설 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군산시의 옥구읍·나포면·성산면·옥도면·옥산 면·옥서면·회현면·개정면·대야면·서수면·임피면, 익산시 의 함열읍·금마면·낭산면·망성면·삼기면·성당면·여산 면·오산면·왕궁면·용동면·용안면·옹포면·춘포면·함라 면·황동면, 완주군, 김제시 공덕면·광활면·금구면·금산 면·만경읍·백구면·백산면·봉남면·부량면·성덕면·용지 면·죽산면·진봉면·청하면·황산면, 부안군, 정읍시의 신태 인읍·고부면·덕천면·북면·산내면·산외면·소성면·영원 면·이평면·입암면·정우면·감곡면·옹동면·칠보면·태인 면, 진안군(진안읍 군하리부터 완주군계까지의 국도 제26호선 에 한한다) 및 고창군 일원의 국도

주택회보